

석면해체제거업

◆ **등록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8]

업종	자본금	인력기준	사무실,장비
석면해체제거업	없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이하 "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 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사무실,장비

* 비고: 인력기준 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시설,장비**

-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작업장 내의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장비)
 - 나. 음압기록장치
 -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 라.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 바. 습윤장치(濕潤裝置)

◆ **사무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 용 건물, 그 밖에 상시 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